|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발전과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 소프트웨어 및 직접회로 산업 기업소득세 혜택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6﹞49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발전과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 주관 부서:  <국무원의 일부 행정심사비준 항목의 취소 및 조정 등 사항에 관한 결정>(국발﹝2015﹞11호) 및 <국무원의 비 행정허가 심사비준 사항 취소 결정>(국발﹝2015﹞27호) 규정에 따라 직접회로 생산기업, 직접회로 설계기업, 소프트웨어기업, 국가계획 내의 중점 소프트웨어기업 및 직접회로 설계기업(이하 '소프트웨어•직접회로기업'으로 통칭)의 세제 혜택 자격 인정 등 비 행정허가 심사비준이 이미 취소되었다.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및 직접회로 산업의 발전을 진일보 격려하기 위한 기업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2﹞27호)에 규정한 기업소득세 특혜 정책을 차질없이 제대로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재세﹝2012﹞27호 문건에 규정한 세제 혜택을 누리는 소프트웨어•직접회로기업은 매년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시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특혜정책 사항 처리 방법> 공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 제76호)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혜택을 누리는 소프트웨어기업 및 직접회로기업 비안(備案) 자료 명세표>(별첨 참조)에 규정된 비안(備案)서류를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혜택 자격 인정 절차 취소 이후의 관리를 확실하게 강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직접회로기업이 혜택을 누린 후 세무 부서는 발전과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 부서에 검사를 신청한다. 검사 결과 소프트웨어•직접회로기업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기업에 대하여 세무부서는 당해 기업이 이미 누린 기업소득세 혜택을 추징하며 아울러 조세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재세﹝2012﹞27호 문건에 규정한 직접회로 생산기업이라함 모놀리식 직접회로, 멀티칩 직접회로, 하이브리드 직접회로의 제조를 주된 업무로 하며 아울러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을 지칭한다:  (1) 중국 경내(홍콩, 마카오, 타이완 지역은 포함하지 않음)에서 법에 따라 등록하였고 발전개혁 및 공업및정보화 부서에 비안(備案)한 주민 기업;  (2)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에 노동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문대 이상 학력을 보유한 근로자 총수가 기업의 월 평균 근로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보다 낮지 않아야 하고, 그 중 연구개발 인력이 기업 월 평균 근로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3)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경영활동을 전개하며,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연구개발비용 총액이 기업의 판매(영업) 수입(주요 업무 수입과 기타 업무 수입의 합계. 아래도 이와 같음)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보다 낮지 않아야 하고, 그 중 중국 경내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금액이 연구개발비용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4)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직접회로 제조판매(영업) 수입이 기업의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5) 제품 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갖추고 관련 자격인증(ISO품질체계인증 포함)을 취득하여야 한다;  (6)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에 중대한 안전 사고, 중대한 품질 사고 또는 심각한 환경 불법행위가 없어야 한다.  3. 재세〔2012〕27호 문건에 규정한 직접회로 설계기업이라함 직접회로 설계를 주된 업무로 하며 아울러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을 지칭한다:  (1) 중국 경내(홍콩, 마카오, 타이완 지역은 포함하지 않음)에서 법에 따라 비안(備案)한 주민 기업;  (2)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에 노동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문대 이상 학력을 보유한 근로자 총수가 기업의 월 평균 근로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보다 낮지 않아야 하고, 그 중 연구개발 인력이 기업 월 평균 근로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3)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경영활동을 전개하며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연구개발비용 총액이 기업의 판매(영업)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그 중 중국 경내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금액이 연구개발비용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4)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직접회로 설계 판매(영업) 수입이 기업의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그 중 직접회로의 자주적 설계 판매(영업) 수입이 기업의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5)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6) 직접회로 설계 사업과 어울리는 소프트웨어시설, 하드웨어시설 등 개발 환경(예를 들면 EDA공구, 서버 또는 워크스테이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7)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에 중대한 안전 사고, 중대한 품질 사고 또는 심각한 환경 불법행위가 없어야 한다.  4. 재세〔2012〕27호 문건에 규정한 소프트웨어기업이라함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발과 판매(영업)를 주된 업무로 하며 아울러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을 지칭한다：  (1) 중국 경내(홍콩, 마카오, 타이완 지역은 포함하지 않음)에서 법에 따라 비안(備案)한 주민 기업;  (2)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에 노동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문대 이상 학력을 보유한 근로자 총수가 기업의 월 평균 근로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보다 낮지 않아야 하고, 그 중 연구개발 인력이 기업 월 평균 근로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3)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경영활동을 전개하며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연구개발비용 총액이 기업의 판매(영업)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그 중 중국 경내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금액이 연구개발비용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4)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영업) 수입이 기업의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통합 판매(영업) 수입이 기업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보다 낮지 않아야 함)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그 중: 소프트웨어의 자주적 개발•판매(영업) 수입이 기업의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통합 판매(영업) 수입이 기업의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보다 낮지 않아야 함)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5)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6)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과 어울리는 소프트웨어시설, 하드웨어시설 등 개발 환경(예를 들면 합법적인 개발 공구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7)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에 중대한 안전 사고, 중대한 품질 사고 또는 심각한 환경 불법행위가 없어야 한다.  5. 재세〔2012〕27호 문건에 규정한 국가계획 내의 중점 직접회로 설계기업의 경우 이 통지 제3조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는 외에 아래 조건 중 최소한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1)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직접회로 설계 판매(영업) 수입이 2억위안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연간 과세대상 소득이 1,000만위안보다 적지 않아야 하며, 연구개발 인력이 기업 월 평균 근로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2)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에 국가가 규정한 직접회로 설계 분야의 직접회로 설계 판매(영업) 수입이 2,000만위안보다 적지 않고, 과세대상 소득이 250만위안보다 적지 않으며, 연구개발 인력이 기업의 월 평균 근로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5%보다 낮지 않아야 하고, 중국 경내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금액이 연구개발비용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6. 재세〔2012〕27호 문건에 규정한 국가계획 내의 중점 소프트웨어기업은 이 통지 제4조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는 외에 아래 조건 중 최소한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1)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판매(영업) 수입이 2억위안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과세대상 소득이 1,000만위안보다 적지 않아야 하며, 연구개발 인력이 기업 월 평균 근로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2)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에 국가가 규정한 중점 소프트웨어 분야의 소프트웨어 판매(영업) 수입이 5,000만위안보다 적지 않고, 과세대상 소득이 250만위안보다 적지 않으며, 연구개발 인력이 기업 월 평균 근로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보다 낮지 않아야 하고, 중국 경내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금액이 연구개발비용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3)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소프트웨어 수출 수입 총액이 800만달러보다 적지 않고, 소프트웨어 수출 수입 총액이 당해 기업의 연간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연구개발 인력이 기업 월 평균 근로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7. 국가가 규정한 중점 소프트웨어 분야 및 중점 직접회로 설계 분야는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가 재정부, 세무총국과 회동하여 국가산업 계획과 배치에 따라 확정하며 동적 조정을 실시한다.  8. 소프트웨어•직접회로기업 인정 조건 중의 연구개발비용 정책은 2015년도에는 여전히 < <기업 연구개발비용 세전 공제 관리 방법(시범시행)> 인쇄발부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8]116호)와 <연구개발비용의 세전 첨산 공제 정책과 관련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3]70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2016년 및 그 이후 연도에는 <연구개발비용의 세전 추가공제 정책 개선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5]119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9. 소프트웨어•직접회로 기업의 정기 세금감면 혜택기간은 기업의 이익실현 연도부터 기산한다. 이익실현 연도에 혜택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최초로 소프트웨어•직접회로기업 조건을 만족시킨 연도부터 시작하여 나머지 혜택기간에 상응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누린다.  10. 성급（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연시. 아래도 이와 같음）재정, 세무, 발전과개혁위원회 및 공업및정보화 부서는 긴밀하게 협력하여 검사제도의 수립 및 검사 결과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소프트웨어•직접회로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실하게 강화하여야 한다.  (1) 성급 세무부서는 매년 3월20일 이전 및 6월20일 이전에 두 차례에 나뉘어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에 이미 소프트웨어•직접회로기업 세제 혜택을 신청하여 누린 기업 명단 및 그 비안(備案)서류를 성급 발전과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중 소프트웨어기업, 직접회로 설계기업 세제 혜택을 누린 기업 명단 및 비안(備案)서류는 성급 공업및정보화 부서에 제출하고 성급 공업및정보화 부서는 전문가팀을 구성하거나 제3자 기구에 위탁하여 명단 상의 기업이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기타 혜택을 누린 기업 명단 및 비안(備案)서류는 성급 발전과개혁 부서에 제출하고, 성급 발전과개혁 부서는 공업및정보화 부서와 회동하여 공동으로 전문가팀을 구성하거나 제3자 기구에 위탁하여 명단 상의 기업이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2015년도 세제 혜택을 누린 기업 명단 및 비안(備案)서류는 성급 세무부서가 2016년 6월 20일 전에 성급 발전과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 부서에 일괄적으로 제출한다.  (2) 성급 발전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 부서는 세제 혜택을 누리는 기업 명단 및 비안(備案)서류를 입수한 후 2개월 이내에 점검 결과를 성급 세무부서(첫번째 명단 점검 결과는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기한 마감 전에 피드백하여야 한다)에 피드백하여야 한다.  (3) 매년 10월 말 전에 성급 재정, 세무, 발전과개혁, 공업및정보화 부서는 검사결과 및 세금 혜택 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재정부, 세무총국,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기업소득세 연말정산이 연기되는 경우 위 기한은 상응하게 연장 할 수 있다.  (4) 성급 재정, 세무, 발전과개혁, 공업및정보화 부서는 이 통지 규정에 따라 현지 실정과 결부하여 구체적인 실시관리방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재정부, 세무총국, 발전과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에 비안(備案)한다.  11.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76호에 첨부된 <기업소득세 혜택 사항 비안(備案) 관리 목록(2015년 버전)> 중의 제38호, 제41호, 제42호, 제43호, 제46호의 소프트웨어•직접회로기업 특혜정책은 더 이상 "정기 세금 감면 혜택 비안(備案) 관리 사항"으로 간주하여 관리하지 아니하며, 이 통지 집행 전에 이미 비안(備案) 등 관련 절차를 마쳤을 경우 세제 혜택을 누리는 연도에는 여전히 이 통지의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12. 이 통지는 2015년1월1일부터 집행한다. <소프트웨어 산업 및 직접회로 산업의 발전을 진일보 격려하기 위한 기업소득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2﹞27호)의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집행을 중단한다.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76호에 첨부된 <기업소득세 혜택 사항 비안(備案) 관리 목록(2015년 버전)>중의 제38호~제43호 및 제46호~제48호의 소프트웨어•직접회로기업 특혜정책의 "비안(備案)서류", "향후의 참고용으로 비치한 주요 자료" 규정은 그 집행을 중단한다.  별첨: 기업소득세 혜택을 누리는 소프트웨어•직접회로기업 비안(備案)서류 명세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발전과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  2016년5월4일  별첨  기업소득세 혜택을 누리는 소프트웨어·직접회로기업 비안(備案)서류 명세표   |  |  | | --- | --- | | 기업 유형 | 비안(備案)서류（복사본의 경우 기업의 공인을 날인하여야 함） | | 직접  회로  생산 기업 | * 1. 발전개혁 또는 공업및정보화 부서에 항목을 입안한 비안(備案) 문건(투자총액, 공예 선폭 표준을 명시하여야 함) 복사본 및 기업이 취득한 기타 자격증서 복사본 등;   2. 기업 근로자 인원수, 학력 구성, 연구개발 인력의 상황 및 연구개발 인력이 당해 기업 근로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설명, 기업소득세 정산 대상 연도 마지막 월의 사회보험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류;   3. 가공하는 주요 직접회로 제품의 리스트 및 국가지적재산권국(또는 관련 해외 지적재산권 주관 기구)이 발행한 기업이 자주적으로 개발하였거나 보유한 1-2개의 대표적인 지적재산권(특허, 평면설계등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의 증명서류;   4. 자격을 갖춘 중개기구로부터 감증을 받은 기업재무회계보고(회계제표, 회계제표 주석 및 재무상황설명서 포함) 및 직접회로 제조·판매(영업) 수입, 연구개발비용, 경내 연구개발비용 등 상황에 대한 설명;   5. 주요 고객과 체결한 1-2부의 대표적인 판매계약서 복사본;   6. 제품 품질 보증 관련 증명서류(예를 들면 품질관리인증증서 복사본 등;   7.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 직접  회로  설계  기업 | * 1. 기업 근로자 인원수, 학력 구성, 연구개발 인력의 상황 및 연구개발 인력이 당해 기업 근로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설명, 및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 마지막 월의 사회보험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류;   2. 기업이 개발하여 판매하는 주요 직접회로 제품 리스트 및 국가지적재산권국(또는 관련 해외 지적재산권 주관 기구)가 발행한 기업이 자주적으로 개발하였거나 보유한 1-2개의 대표적인 지적재산권(특허, 평면설계등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의 증명서류;   3. 자격을 갖춘 중개기구로부터 감증을 받은 기업재무회계보고(회계제표, 회계제표 주석 및 재무상황설명서 포함) 및 직접회로의 자주적인 설계 판매(영업) 수입, 연구개발비용, 경내 연구개발비용 등에 대한 상황표;   4. 제3자 검측기구가 발행한 직접회로 제품의 테스트 보고서 또는 사용자 보고서 및 주요 고객과 체결한 1-2부의 대표적인 판매계약서 복사본;   5. 기업의 개발환경 등 관련 증명서류;   6.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 소프트  웨어 기업 | * 1. 기업이 개발하여 판매하는 주요 소프트웨어 제품 리스트 또는 기술서비스 리스트;   2. 주요 업무가 소프트제품 개발인 기업의 경우 최소한 1개 주요 제품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또는 특허권 등 자주적인 지적재산권 유효 증명서류 및 제3자 검측기구가 발행한 소프트웨어 테스트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가 기술서비스뿐인 기업은 핵심기술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기업 근로자 인원수, 학력 구성, 연구개발 인력의 상황 및 연구개발 인력이 당해 기업 근로자 총수에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설명, 및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 마지막 월의 사회보험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류;   4. 자격을 갖춘 중개기구로부터 감증을 받은 기업재무회계보고(회계제표, 회계제표 주석 및 재무상황설명서 포함) 및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발·판매(영업) 수입, 소프트웨어 제품의 자주적인 개발·판매(영업) 수입, 연구개발비용, 경내 연구개발비용 등 상황에 대한 설명;   5. 주요 고객과 체결한 1-2부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제품 판매계약서 또는 기술서비스계약서 복사본;   6. 기업의 개발환경 관련 증명서류;   7.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 국가가  계획하고 구도를 짠 중점 소프트웨어 기업 | * 1.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소득세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제출한 비안(備案)서류;   2. 제2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국가가 규정한 중점 소프트웨어 분야의 판매(영업) 상황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3류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상무주관부서가 발행한 수출계약서등기증서와 유효한 수출계약서 및 외화결제 증명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 국가가  계획하고 구도를 짠 중점  직접  회로  설계  기업 | * 1. 기업이 직접회로설계기업 소득세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제출한 비안(備案)서류;   2. 제2류에 부합되는 경우 국가가 규정한 중점 직접회로 설계 분야의 판매(영업)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  | **财政部、国家税务总局、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关于软件和集成电路产业企业所得税优惠政策有关问题的通知**  财税〔2016〕49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  　　按照《国务院关于取消和调整一批行政审批项目等事项的决定》（国发〔2015〕11号）和《国务院关于取消非行政许可审批事项的决定》（国发〔2015〕27号）规定，集成电路生产企业、集成电路设计企业、软件企业、国家规划布局内的重点软件企业和集成电路设计企业（以下统称软件、集成电路企业）的税收优惠资格认定等非行政许可审批已经取消。为做好《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发展企业所得税政策的通知》（财税〔2012〕27号）规定的企业所得税优惠政策落实工作，现将有关问题通知如下：  　　一、享受财税〔2012〕27号文件规定的税收优惠政策的软件、集成电路企业，每年汇算清缴时应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企业所得税优惠政策事项办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76号）规定向税务机关备案，同时提交《享受企业所得税优惠政策的软件和集成电路企业备案资料明细表》（见附件）规定的备案资料。  　　为切实加强优惠资格认定取消后的管理工作，在软件、集成电路企业享受优惠政策后，税务部门转请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部门进行核查。对经核查不符合软件、集成电路企业条件的，由税务部门追缴其已经享受的企业所得税优惠，并按照税收征管法的规定进行处理。  　　二、财税〔2012〕27号文件所称集成电路生产企业，是指以单片集成电路、多芯片集成电路、混合集成电路制造为主营业务并同时符合下列条件的企业：  　　（一）在中国境内（不包括港、澳、台地区）依法注册并在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部门备案的居民企业；  （二）汇算清缴年度具有劳动合同关系且具有大学专科以上学历职工人数占企业月平均职工总人数的比例不低于40%，其中研究开发人员占企业月平均职工总数的比例不低于20%；  　　（三）拥有核心关键技术，并以此为基础开展经营活动，且汇算清缴年度研究开发费用总额占企业销售（营业）收入（主营业务收入与其他业务收入之和，下同）总额的比例不低于5%；其中，企业在中国境内发生的研究开发费用金额占研究开发费用总额的比例不低于60%；  　　（四）汇算清缴年度集成电路制造销售（营业）收入占企业收入总额的比例不低于60%；  　　（五）具有保证产品生产的手段和能力，并获得有关资质认证（包括ISO质量体系认证）；  　　（六）汇算清缴年度未发生重大安全、重大质量事故或严重环境违法行为。  三、财税〔2012〕27号文件所称集成电路设计企业是指以集成电路设计为主营业务并同时符合下列条件的企业：  　　（一）在中国境内（不包括港、澳、台地区）依法注册的居民企业；  （二）汇算清缴年度具有劳动合同关系且具有大学专科以上学历的职工人数占企业月平均职工总人数的比例不低40%，其中研究开发人员占企业月平均职工总数的比例不低于20%；  （三）拥有核心关键技术，并以此为基础开展经营活动，且汇算清缴年度研究开发费用总额占企业销售（营业）收入总额的比例不低于6%；其中，企业在中国境内发生的研究开发费用金额占研究开发费用总额的比例不低于60%。  （四）汇算清缴年度集成电路设计销售（营业）收入占企业收入总额的比例不低于60%，其中集成电路自主设计销售（营业）收入占企业收入总额的比例不低于50%；  　　（五）主营业务拥有自主知识产权；  　　（六）具有与集成电路设计相适应的软硬件设施等开发环境（如EDA工具、服务器或工作站等）；  （七）汇算清缴年度未发生重大安全、重大质量事故或严重环境违法行为。  　　四、财税〔2012〕27号文件所称软件企业是指以软件产品开发销售（营业）为主营业务并同时符合下列条件的企业：  （一）在中国境内（不包括港、澳、台地区）依法注册的居民企业；  （二）汇算清缴年度具有劳动合同关系且具有大学专科以上学历的职工人数占企业月平均职工总人数的比例不低于40%，其中研究开发人员占企业月平均职工总数的比例不低于20%；  （三）拥有核心关键技术，并以此为基础开展经营活动，且汇算清缴年度研究开发费用总额占企业销售（营业）收入总额的比例不低于6%；其中，企业在中国境内发生的研究开发费用金额占研究开发费用总额的比例不低于60%；  （四）汇算清缴年度软件产品开发销售（营业）收入占企业收入总额的比例不低于50%（嵌入式软件产品和信息系统集成产品开发销售（营业）收入占企业收入总额的比例不低于40%），其中：软件产品自主开发销售（营业）收入占企业收入总额的比例不低于40%（嵌入式软件产品和信息系统集成产品开发销售（营业）收入占企业收入总额的比例不低于30%）；  　　（五）主营业务拥有自主知识产权；  （六）具有与软件开发相适应软硬件设施等开发环境（如合法的开发工具等）；  　　（七）汇算清缴年度未发生重大安全、重大质量事故或严重环境违法行为。  　　五、财税〔2012〕27号文件所称国家规划布局内重点集成电路设计企业除符合本通知第三条规定，还应至少符合下列条件中的一项：  （一）汇算清缴年度集成电路设计销售（营业）收入不低于2亿元，年应纳税所得额不低于1000万元，研究开发人员占月平均职工总数的比例不低于25%；  （二）在国家规定的重点集成电路设计领域内，汇算清缴年度集成电路设计销售（营业）收入不低于2000万元，应纳税所得额不低于250万元，研究开发人员占月平均职工总数的比例不低于35%，企业在中国境内发生的研发开发费用金额占研究开发费用总额的比例不低于70%。  　　六、财税〔2012〕27号文件所称国家规划布局内重点软件企业是除符合本通知第四条规定，还应至少符合下列条件中的一项：  （一）汇算清缴年度软件产品开发销售（营业）收入不低于2亿元，应纳税所得额不低于1000万元，研究开发人员占企业月平均职工总数的比例不低于25%；  （二）在国家规定的重点软件领域内，汇算清缴年度软件产品开发销售（营业）收入不低于5000万元，应纳税所得额不低于250万元，研究开发人员占企业月平均职工总数的比例不低于25%，企业在中国境内发生的研究开发费用金额占研究开发费用总额的比例不低于70%；  （三）汇算清缴年度软件出口收入总额不低于800万美元，软件出口收入总额占本企业年度收入总额比例不低于50％，研究开发人员占企业月平均职工总数的比例不低于25%。  　　七、国家规定的重点软件领域及重点集成电路设计领域，由国家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会同财政部、税务总局根据国家产业规划和布局确定，并实行动态调整。  　　八、软件、集成电路企业规定条件中所称研究开发费用政策口径，2015年度仍按《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企业研究开发费用税前扣除管理办法（试行）〉的通知》（国税发〔2008〕116号）和《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研究开发费用税前加计扣除有关政策的通知》（财税〔2013〕70号）的规定执行，2016年及以后年度按照《财政部 国家税务总局 科技部关于完善研究开发费用税前加计扣除政策的通知》（财税〔2015〕119号）的规定执行。  　　九、软件、集成电路企业应从企业的获利年度起计算定期减免税优惠期。如获利年度不符合优惠条件的，应自首次符合软件、集成电路企业条件的年度起，在其优惠期的剩余年限内享受相应的减免税优惠。  　　十、省级（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下同）财政、税务、发展改革和工业和信息化部门应密切配合，通过建立核查机制并有效运用核查结果，切实加强对软件、集成电路企业的后续管理工作。  （一）省级税务部门应在每年3月20日前和6月20日前分两批将汇算清缴年度已申报享受软件、集成电路企业税收优惠政策的企业名单及其备案资料提交省级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部门。其中，享受软件企业、集成电路设计企业税收优惠政策的名单及备案资料提交给省级工业和信息化部门，省级工业和信息化部门组织专家或者委托第三方机构对名单内企业是否符合条件进行核查；享受其他优惠政策的名单及备案资料提交给省级发展改革部门，省级发展改革部门会同工业和信息化部门共同组织专家或者委托第三方机构对名单内企业是否符合条件进行核查。  　　2015年度享受优惠政策的企业名单和备案资料，省级税务部门可在2016年6月20日前一次性提交给省级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部门。  　　（二）省级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部门应在收到享受优惠政策的企业名单和备案资料两个月内将复核结果反馈省级税务部门（第一批名单复核结果应在汇算清缴期结束前反馈）。  （三）每年10月底前，省级财政、税务、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部门应将核查结果及税收优惠落实情况联合汇总上报财政部、税务总局、国家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  　　如遇特殊情况汇算清缴延期的，上述期限可相应顺延。  　　（四）省级财政、税务、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部门可以根据本通知规定，结合当地实际，制定具体操作管理办法，并报财政部、税务总局、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备案。  十一、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76号所附《企业所得税优惠事项备案管理目录（2015年版）》第38、41、42、43、46项软件、集成电路企业优惠政策不再作为“定期减免税优惠备案管理事项”管理，本通知执行前已经履行备案等相关手续的，在享受税收优惠的年度仍应按照本通知的规定办理备案手续。  　　十二、本通知自2015年1月1日起执行。《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发展企业所得税政策的通知》（财税〔2012〕27号）第九条、第十条、第十一条、第十三条、第十七条、第十八条、第十九条和第二十条停止执行。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76号所附《企业所得税优惠事项备案管理目录（2015年版）》第38项至43项及第46至48项软件、集成电路企业优惠政策的“备案资料”、“主要留存备查资料”规定停止执行。  　　附件：享受企业所得税优惠政策的软件和集成电路企业备案资料明细表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发展改革委  工业和信息化部　　　　　　　　　2016年5月4日    附件  享受企业所得税优惠政策的软件和集成  电路企业备案资料明细表   | 企业类型 | 备案资料（复印件须加盖企业公章） | | --- | --- | | 集成电路生产企业 | 1.在发展改革或工业和信息化部门立项的备案文件（应注明总投资额、工艺线宽标准）复印件以及企业取得的其他相关资质证书复印件等；  2.企业职工人数、学历结构、研究开发人员情况及其占企业职工总数的比例说明，以及汇算清缴年度最后一个月社会保险缴纳证明等相关证明材料；  3.加工集成电路产品主要列表及国家知识产权局（或国外知识产权相关主管机构）出具的企业自主开发或拥有的一至两份代表性知识产权（如专利、布图设计登记、软件著作权等）的证明材料；  4.经具有资质的中介机构鉴证的企业财务会计报告（包括会计报表、会计报表附注和财务情况说明书）以及集成电路制造销售（营业）收入、研究开发费用、境内研究开发费用等情况说明；  5.与主要客户签订的一至两份代表性销售合同复印件；  6.保证产品质量的相关证明材料（如质量管理认证证书复印件等）；  7.税务机关要求出具的其他材料。 | | 集成电路设计企业 | 1.企业职工人数、学历结构、研究开发人员情况及其占企业职工总数的比例说明，以及汇算清缴年度最后一个月社会保险缴纳证明等相关证明材料；  2.企业开发销售的主要集成电路产品列表，以及国家知识产权局（或国外知识产权相关主管机构）出具的企业自主开发或拥有的一至两份代表性知识产权（如专利、布图设计登记、软件著作权等）的证明材料；  3.经具有资质的中介机构鉴证的企业财务会计报告（包括会计报表、会计报表附注和财务情况说明书）以及集成电路设计销售（营业）收入、集成电路自主设计销售（营业）收入、研究开发费用、境内研究开发费用等情况表；  4.第三方检测机构提供的集成电路产品测试报告或用户报告，以及与主要客户签订的一至两份代表性销售合同复印件；  5.企业开发环境等相关证明材料；  6.税务机关要求出具的其他材料。 | | 软件企业 | 1.企业开发销售的主要软件产品列表或技术服务列表；  2.主营业务为软件产品开发的企业，提供至少1个主要产品的软件著作权或专利权等自主知识产权的有效证明文件，以及第三方检测机构提供的软件产品测试报告；主营业务仅为技术服务的企业提供核心技术说明；  3.企业职工人数、学历结构、研究开发人员及其占企业职工总数的比例说明，以及汇算清缴年度最后一个月社会保险缴纳证明等相关证明材料；  4.经具有资质的中介机构鉴证的企业财务会计报告（包括会计报表、会计报表附注和财务情况说明书）以及软件产品开发销售（营业）收入、软件产品自主开发销售（营业）收入、研究开发费用、境内研究开发费用等情况说明；  5.与主要客户签订的一至两份代表性的软件产品销售合同或技术服务合同复印件；  6.企业开发环境相关证明材料；  7.税务机关要求出具的其他材料。 | | 国家规划布局内重点软件企业 | 1.企业享受软件企业所得税优惠政策需要报送的备案资料；  2.符合第二类条件的，应提供在国家规定的重点软件领域内销售（营业）情况说明；  3.符合第三类条件的，应提供商务主管部门核发的软件出口合同登记证书，以及有效出口合同和结汇证明等材料；  4.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材料。 | | 国家规划布局内重点集成电路设计企业 | 1.企业享受集成电路设计企业所得税优惠政策需要报送的备案资料；  2.符合第二类条件的，应提供在国家规定的重点集成电路设计领域内销售（营业）情况说明；  3.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材料。 | |